총학생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본 회는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(이하 “본 회”라 한다)라고 칭한다.

제 2 조 (목적) 본 회는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학생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학문 탐구와 건전한 대학 문화를 창달하며, 대학의 자율적 발전에 부응하는 실천 과정 속에서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설치) 본 회는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안에 둔다.

제 4 조 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의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.
단, 계약학과 및 시간제 등록생은 제외하며 휴학 중에 있는 학생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제 5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②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③본 회의 회원은 사업 계획, 회비와 재정, 그 밖의 본 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.
④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자율과 본 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제 6 조 (지도) 본 회는 학생자치활동에 관련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.

제 7 조 (기구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총회, 대의원회, 상임위원회, 중앙운영위원회, 총·부학생회장과 집행부, 단과대학 학생회의 기구를 둔다.

제 2 장 학생총회

제 8 조 (구성) 학생총회는 본 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9 조 (의장) ①학생총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. 단, 총학생회장 유고 시에는 부학생회장, 집행부의 장의 순서로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②총학생회 정·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결정 시에는 대의원회 의장이 학생총회 의장이 된다.

제 10 조 (권한) ①학생총회는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는다.
②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및 결정한다.

제 11 조 (소집)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1.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에 총학생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개최 6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2. 임시총회는 대의원회, 상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(의원) 2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, 본 회 회원 1/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 12 조 (의결) 학생총회는 회원 1/3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학생총회에

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본 회의 회원은 이를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.

제 3 장 대의원회

제 13 조 (지위) 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. 단, 학생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있을 시에 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한다.

제 14 조 (구성) ①대의원회는 본 회의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②대의원은 우리 대학교 각 학부(과/전공), 학년별 재학생들의 추천으로 선출된 대표로 한다. 단, 대의원은 학부(과/전공) 대표를 겸임할 수 있으나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·부회장, 집행부, 학부(과/전공) 학생회장·부학생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.

③대의원 수는 학부(과/전공), 학년별로 1인씩 선출한다.

제 15 조 (의장)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 16 조 (업무 및 권한)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권
2.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
3.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권
4. 총학생회장의 탄핵권
5. 중앙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 요구권
6. 사업 계획 및 사업 보고의 심의 및 승인권
7. 감사 결과 부정 발견 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교 당국에의 징계 요구권
8. 예산·결산안의 심의 및 승인권
9. 집행부 승인권
10.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

제 17 조 (소집)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1.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, 11월에 의장이 소집한다.
2.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1/5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 또는 상임위원회 2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8 조 (의결) ①대의원회 의결은 제16조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제16조 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제4호는 재적 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9 조 (임기) 대의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4 장 상임위원회

제 20 조 (구성) 대의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둔다.

①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으로 한다.

②상임위원은 각 대학 대의원이 호선한 대표 대의원으로 한다.

③상임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21 조 (업무 및 권한) ①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부과한 안건에 관한 사항
2.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
3.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권
4. 회칙 개정의 발의
5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회계 및 사무심사
7. 중앙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 요구권
8. 기타 회칙에 명시된 사항

②상임위원회 운영 경비 및 집행 내역은 학기별로 대의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
③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 중 긴급한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대의원총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재적 상임위원 2/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써 대의원총회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 22 조 (의결) 상임위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장 총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

제 23 조 (지위) ①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학생총회 의장,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집행부의 장이 된다.

②부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. 단, 회장의 궐위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기간 동안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24 조 (자격) 총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우리 대학교에서 4학기 이상 등록하고,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
   (단, 재선거 시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,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)
2. 전체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.5 이상인 자
3.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4.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
제 25 조 (임기)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 단, 학생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임기종료일에서 2개월 연장할 수 있다.

제 26 조 (업무 및 권한) 총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집행부 임원의 임면에 대한, 대의원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
2. 본 회의 총회, 중앙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의 회의 소집 및 주관
3. 본 회 회원의 중의를 대표하고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
4. 본 회 전체 사업 계획의 수립과 대의원회로부터 예·결산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제출하는 사항
5.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의 집행
6.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

제 6 장 중앙운영위원회

제 27 조 (지위) 중앙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심의 기구이다.

제 28 조 (구성) ①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, 부학생회장,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, 본 회 집행부 부장 2인으로 구성한다. 단, 위원회가 필요로 한 경우에 해당 동아리나 학부(과/전공) 학생회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
②예산편성 시에 한하여 대의원회 의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 29 조 (업무 및 권한)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학생회비의 책정 및 대의원회 상정
2.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
3.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권
4.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의 제반 사업과 예산·결산 보고서의 검토, 조정, 심의 및 대의원회 제출
5. 집행부의 업무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, 조정, 심의
6. 회칙 개정안의 발의와 대의원회 상정
7.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의 의결

제 30 조 (소집)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1. 정기회의는 매월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2.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.

제 31 조 (의결)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 장 집행부

제 32 조 (지위)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 기구이다.

제 33 조 (업무 및 권한, 조직)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1.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집행
2. 총학생회에 관한 일체의 사업계획보고서와 결산 보고서의 대의원회 제출
3. 집행부는 7개 이하의 부로 조직하고 각 부는 부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며 명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8 장 재 정

제 34 조 (재정) ①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.
②본 회의 회비는 본 회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 35 조 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차기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며, 예산집행은 2기로 나누어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.

제 36 조 (예산) ①각 학생자치기구는 다음 학기의 총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.
②예산은 본 회를 구성하는 각 기구별 사업 계획에 의하여 항목별로 편성한다.
③대의원회는 동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학생복지팀에 제출한 이후, 대의원총회에 공표하여야 한다.
④대의원회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, 확정하고 확정 후 3일 이내에 각 학생자치기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⑤대의원회 상임위원회는 확정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.
⑥예산 확정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수입이나 지출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동 추경 예산안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⑦총학생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교 당국에 위임하고 그 인출 및 집행은 학교의 일반 회계 지출 절차에 준하여 각 학생자치기구가 집행한다.

제 37 조 (가예산) 본 회의 예산이 소정 기일 내에 확정되지 못하여 본 회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때 각 학생자치기구는 대의원회와 협의하여 본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제 38 조 (결산보고) ①각 학생자치기구는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결산 보고서를 수합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각 학생자치기구는 대의원회 및 학생복지팀의 승인 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39 조 (감사) 본 회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9 장 단과대학 학생회

제 40 조 (지위 및 구성) 단과대학 학생회(이하 “단대 학생회”라 한다)는 본 회 하부 구조로서,

당해 대학의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. 단, 당해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부(과/전공)가 2개 이상 이어야 단대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 41 조 (회원) 본 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해 대학의 재학생으로 한다.

제 42 조 (회장 및 부회장) ①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4학기 이상 등록하고,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
   (단, 재선거 시에는 5학기 이상 등록하고,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)
2. 전체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.5 이상인 자
3.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
4.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
②단대 학생회 회장은 당해 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, 본 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.

③단대 학생회 회장은 단대 학생회 사업 계획 및 예·결산 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한다.

제 43 조 (집행부) 단대 학생회 집행부는 본 회 집행부에 준하여 4인의 부장을 둔다.

제 44 조 (운영위원회) 단대 운영위원회는 해당 단대 학생회 회장·부회장, 집행부 그리고 학부(과/전공)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.

제 45 조 (업무 및 권한) 단대 학생회는 당해 대학의 각 학부(과/전공)를 기반으로 본 회 제반 기구의 업무에 준하여 자치활동을 수행한다.

제 46 조 (예산) 단대 학생회 예산 배정은 각 대학별 학생회비 납부자 수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의원회에서 조정, 심의한다.

제 47 조 (단대 학생회칙) 단대 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회 회칙에 준하여 각 단대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48 조 (임기) 단대 학생회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 단, 학생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임기종료일에서 2개월 연장할 수 있다.

제 10 장 선 거

제 49 조 (선거 시기) 총·부학생회장, 대의원회 의장·부의장, 그리고 단대 학생회 회장·부회장의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의 11월 중에 실시한다. 단, 재선거는 당해 연도 3월 중에 실시하며, 상임위원 재선거는 대의원총회 시 실시할 수 있다.

제 50 조 (선거관리위원회 설치) 본 회의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
1.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단대선거관리위원회로 구분한다.
2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대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  (단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하 “중앙선관위”로 하고, 단대선거관리위원회는 이하 “단대선관위”로 한다)
3. 총·부학생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로 하며, 중앙선관위는 대의원회 상임위원회로 한다.
4. 각 단대 학생회 회장·부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대 학생회 임원으로 하며, 중앙선관위

가 선거 전반을 관리·감독한다. (단, 단대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단대 학생회 회장·부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로 한다)

5. 기타 중앙선관위 위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위원장의 권한으로 대의원 중에서 대학별 각 1명씩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.

제 51 조 (총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거)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입후보자는 2인 1조가 되어 선거의 전 과정에 1개 조로서 참여하고, 본 회 전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단일후보인 경우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52 조 (단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선거) 제51조에 준하며, 해당 대학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
제 53 조 (선거 방법) ①제51조, 52조의 선거는 보통, 직접, 비밀, 평등선거로 하되, 당해 회원 35% 이상 참가 시 유효하다.

②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 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정·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.(단, 단대 학생회 정·부회장은 차기 총학생회 정·부회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.)

제 54 조 (보궐선거) 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잔임기간이 150일 이상일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.

제 55 조 (대의원 선거) 대의원은 각 학부(과/전공)의 학년별 재학생의 추천으로 선출한다.

제 56 조 (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) ①대의원회 의장·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피선거권은 4학기 이상 등록한 대의원에게만 있다.

②대의원회 의장·부의장의 선출에 있어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

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제 57 조 (선거 시행세칙)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 11 장 회칙개정

제 58 조 (발의)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의원회 재적 1/5 이상의 발의
2.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/3 이상의 발의
3. 본 회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
4.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2/3 이상의 발의

제 59 조 (의결) 본 회칙 개정 발의 시 대의원회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,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에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2 장 학생지도위원회

제 60 조 (구성) ①본 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및 단대 학생회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.

②본 회 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은 학생지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제 61 조 (기능)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회 활동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지도·감독한다.

1.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조직에 관한 사항
3.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
4. 예산·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
5. 학생자치활동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.
6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7. 단, 위 1, 2, 3, 4호의 경우 사전에 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8. 단대 학생회 학생지도위원회는 해당 대학 학생회 활동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.

제 13 장 보 칙

제 62 조 회칙에 나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의 시행세칙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06 년 03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14 년 12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15 년 10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16 년 03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16 년 09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16 년 12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18 년 10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19 년 10 월 02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20 년 07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20 년 12 월 07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21 년 04 월 0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22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23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2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25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